

의안번호	2211033
의 퇴 인	김형동 의원
회 답 일	2025.8.29.
추 계 번호	25B33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1조의2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 교육) 신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제1항)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의무규정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함(제2항)	의무규정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7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5항)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1조의2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 교육)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안 제175조(과태료)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1)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근로자²⁾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안 제31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175조제5항)
 - 개정안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며(안 제31조의2제2항),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³⁾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31조의2제3항)
 -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안 제31조의2제4항)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그러나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안 제31조의2제5항) 장래에 발생할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개정안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4)는 건설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5) 및 제158조6) 등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기초 안전보건교육 사업7)을 시행하고 있음

※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

- * (사업내용) 건설업 일용노동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대상 교육비 지원
- * (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지원내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과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취약계층 교육비(4만원/인)를 교육기관에 지급, 교재제작 등 사업수행경비

[표 1] 취약계층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 예결산 현황: 2021~2025년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5,958	6,182	6,474	7,301	6,884

자료: 고용노동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4)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자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 6)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7) 안전보건문화정착(코드: 4154-350) 사업의 내내역 사업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